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49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최민희 · 허성무 · 김우영
박민규 · 최혁진 · 양문석
김 현 · 한민수 · 노종면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미비하며, 정부 내 각 부처의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인 등 인공지능 시대의 범정부 최고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개편 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부처간 인공지능 기반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강화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운영·지원 근거를 마련 하여 인공지능 연구개발 강화와 이를 통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국가적으로 지원·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
2항 및 제3항).
- 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
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 라.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정부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을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를 “제1호 또는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정책”을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는 소장을 두고, 정관·내규 등을 통해 소장에게 경영, 사업, 연구 등 연구소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⑥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인공지능연구소는 법인으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제3항에 따른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

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 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제7조에 따른 <u>국가인공지능 위원회</u> 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 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① ----- ----- ----- ----- ----- ----- ----- <u>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u>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u>국가인공지능위원회</u>) ① 인 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u>국가인공지능 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7조(<u>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u>) ① ----- ----- ----- ----- <u>국가인공지능전략 위원회</u> -----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후단 신설>

④ ~ ⑭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2.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

② -----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③ -----제1호 또는 제4호-----.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 ~ ⑭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

3. ~ 6. (생략) <u><신설></u> 7. ~ 13.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u>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u> 3. ~ 6. (현행과 같음) <u>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u> 7.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u> <u>⑤ -----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u> <u>---</u> <u>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u>
--	---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는 소장을 두고, 정관·내규 등을 통해 소장에게 경영, 사업, 연구 등 연구소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기

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 · 이전 · 활용 및 사업화
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 · 국제협력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 · 보조할 수 있다.

⑥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인공지능연구소는 법인으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제3항에 따른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
우

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
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
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
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
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 필요

	<u>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